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제15판)

2023. 9. 1.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유입에 따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수정사항
개정	• **감염병의심자 추가** ○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인 사람
	•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미지정 사항 반영**
	• **검역조사·조치 완화** ○ (기존) 유증상자, 의심환자 임시격리 의무 → (변경) 삭제
	• **보고 의무 완화** ○ **(기존)** 환자 발생 메모보고, 유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행 → **(변경)**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보고만 시행
	•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소독 완화** ○ **(기존)** 의심환자 발생시, 소독명령(소독대행업체 의뢰 소독) 및 이동 금지 → **(변경)** 소독명령(운송수단 자체 소독)

목 차

Ⅰ. 대응원칙 ····· 1

Ⅱ. 사례정의 ····· 2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 4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4
2. 검역대응 흐름도 ····· 4
3. 입국검역 ····· 5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5
5. 무증상자 조치 ····· 8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 9

1. 항만 검역대응 주요 용어정의 ····· 9
2.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10
3. 검역대응 흐름도 ····· 10
4. 검역조사 ····· 11
5.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12
6. 무증상자 조치 ····· 14

Ⅴ. 진단검사 ····· 15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 17

Ⅶ. 기타 행정사항 ····· 18

서식 및 부록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 19
2. <삭제> ····· 20
3. <삭제> ····· 21
4. <삭제> ····· 22
4-1. <삭제> ····· 23
5. <삭제> ····· 24
6. <삭제> ····· 25
7.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 26
8. 검사의뢰 관리대장 ····· 27
9.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28
10. <삭제> ····· 29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 30
12. <삭제> ····· 32
13.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신설> ····· 33

≪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 35
2.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39
3. <삭제> ····· 46
4. <삭제> ····· 47

I. 대응원칙

1. 법적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따른 ‘제4급감염병’으로 대응함

* (근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제2호가목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2. 대응방향

○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권고’ 및 ‘자율’ 기조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검역 대응 수행

○ 향후 발생 상황, 변이 발생 여부,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사례 정의와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 가능하며

- 공·항만의 코로나19 관련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 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검역업무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용함

Ⅱ. 사례정의 등

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경계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
 * 근거: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사 4. 제4급감염병(4-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 한시 시행 ('22. 3. 14.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한시 시행 ('22. 3. 14. ~ 별도 안내시까지)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판단할 수 있음

2. 감염병의심자 정의(①~③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3.5.19.. 시행)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②「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④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인 사람

3. 장기체류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 분류 정의

○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B-1, B-2, C-1, C-3, C-4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주요 추진경과]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22.6.8.~)

◆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22.9.3.~)

◆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22.10.1.~)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중단(`23.6.1.~)

◆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변경: 전세계 → 미지정(`23.7.15.~)

[지속 추진사항]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2. 공항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구분		PCR 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관찰시설 또는 별도 공간 검체채취)	⇨	양성	⇨	▲자택, ▲병원, ▲재택격리입소시설* 격리 권고 *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
			⇨	음성	⇨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무증상자

구 분		PCR 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내국인/외국인	⇨	의료기관 (비용 본인부담)	⇨	양성	⇨	확진자 격리 권고
			⇨	음성	⇨	-

3. 입국검역

◆ 검역관리지역발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 (**대상**) 검역관리지역발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검역관리지역 외 입국자는 개별 발열감시 실시

○ (**구성**) 입국자 발열 여부(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한 건강상태 정보 확인

○ **검역정보 확인**

- (**Q-CODE 이용자**)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고, 검역관은 Q-CODE를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정보 확인

- (**Q-CODE 미이용자**)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Q-CODE에 건강상태 정보 입력, 검역관은 Q-CODE를 통해 입국자 정보 확인
  * Q-CODE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역 실시

4. 유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유증상자 기준**)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로 설정

○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

1.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 환자 등 (기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
2.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
3. 입국장에서의 **체온 측정***, **건강상태질문서****(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
   **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기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기내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법」 상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하여 **신고**

  * 기내 유증상자 및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 별지 명세표에 유증상자 작성

- **유증상자**를 **우선 하기**하여 **검역대**에 **인계**, 검역소는 보건교육, 임시격리, 검체채취 등 조치 실시

○ **유증상자 검역조사**

-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 실시

  *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

  ※ 국내 거소지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격리관찰시설(실)에서 대기 가능

-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 검역소 소재지 119 신고 고려

- 상태가 **경증**인 경우,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

  *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

[(참고) 중증도 분류기준]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

단계	정의	현행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중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

- **(검역관)**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서식 13] 작성 후 **코로나19 의심 시** 별도의 **격리공간**(실)으로 **함께 이동** 및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에게 **인계**

  *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참고하여 **의심 환자 사례분류 시 PCR검사 실시**

  * 역학조사 시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유증상자)**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등)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 격리 가능

○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자택, ▲병원 또는 ▲재택격리 입소시설 등에서 격리 권고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Ⅵ.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5. 무증상자 조치

○ **(내국인·외국인)**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비용 자부담)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군부대에서 자체관리

- **(양성)** ▲자택, ▲병원 또는 ▲재택격리 입소시설 등에서 격리 권고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Ⅵ.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별도 조치 불요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항만 검역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하선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

-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출입국에 상륙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 **선박 탑승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

- (**선원**)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선원법」에 따라 공인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전선 또는 편승 인원을 포함)

- (**여객**)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으면서 근로 제공 외의 목적으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에 탑승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

- (**기타탑승자**) 선원과 여객을 제외한 인원

※ 기존 검역 대응 지침 상 '승객'으로 표현된 인원을 '기타탑승자'로 적용함

2.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주요 추진경과]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22.6.8.~)

◆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22.9.3.~)

◆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22.10.1.~)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중단(`23.6.1.~)

◆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변경: 전세계 → 미지정(`23.7.15.~)

[지속 추진사항]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3.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입항	구분	PCR 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관찰시설 또는 선내 별도 공간 검체채취)	⇨ 양성	⇨ ▲자택, ▲병원, ▲재택격리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권고 *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
			⇨ 음성	⇨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무증상자

입항	구 분	PCR 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	하선자(내국인/외국인) - 입국자 - 재승선 내국인 - 상륙 허가자	⇨ 의료기관 (비용 본인부담)	⇨ 양성	⇨ 확진자 격리 권고
⇨			⇨ 음성	⇨ -

4. 검역조사

○ **(승선검역) 승선검역 대상*** **선박**은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탑승자 전원'**의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 검역조사 실시

> ※ **승선검역 대상**
>
> ①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건상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
> ②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③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선박의 경우
>
> ④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
> ⑤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
> ⑥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승선 검역) 서류**(전자)**검역 대상 선박** 경우 전산을 통해 검역조사 실시

-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전산 심사결과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 시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 서류검역의 경우, **선박 자체 발열감시 가능**(검역통보일자 또는 선박입항일자에 발열체크를 수행하고, 발열체크 결과를 검역소에 제출)

** 여객터미널이 있는 여객선, 크루즈선 검역은 선박 자체 발열감시 제외 (검역관이 검역대에서 개별 발열감시 직접 수행)

5. 유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유증상자 기준**)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모든 하선자 대상)

○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

1. **선박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 등 (선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
2.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
3. **입국장**에서의 **체온 측정***,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

**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

○ (**선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선내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법」 상 선박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하여 **신고**

*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후면에 기재

- (**여객선**) 유증상자를 분리조치 후 검역소에 인계, 검역소는 보건교육,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등 조치

○ (**유증상자 검역조사**)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또는 선내 독립된 공간 등에서 **검체채취**** 실시

*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

※ 크루즈선 내 선의가 시행한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시

① 선내에서 5일 격리 권고

② 하선을 희망할 경우 검역단계에서 검역소 검체채취 실시(PCR 검사)

③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운송수단 감염 예방 조치 실시(선박소독 등)

* 선박 자체 소독 수행(소독결과보고서 확인,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 사용 확인 등)

-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
- **상태**가 **경증**인 경우,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

  *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

[(참고) 중증도 분류기준]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

단계	정의	현행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중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

- **(검역관)**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서식 13] 작성 후 **코로나19 의심 시** 별도의 **격리공간**(실)으로 **함께 이동** 및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에게 **인계**

  *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참고하여 **의심 환자 사례분류 시 PCR검사 실시**

  * 역학조사 시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유증상자)**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등)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관찰시설(실), 선실 등에서 임시 격리 가능

○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권고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Ⅵ.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하역 작업 등**)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선원교대 등 가능

6. 무증상자 조치

○ (**내국인·외국인**)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비용 자부담)

- (**양성**)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권고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Ⅵ.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별도 조치 불요

Ⅴ. 진단검사

※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1.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

○ (**검체채취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 검역조사실, 격리관찰시설(실), 선내 등

○ (**검체종류**)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

* [부록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 참조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 채취

*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

- (**하기도 검체**) 가래가 있는 경우 채취(가래 유도 금지)

○ (**개인보호구**)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부록 2]

○ (**검사의뢰**)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공문 등)

* 검체 의뢰시 검사의뢰 관리대장[서식 8]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일일현황 실적 보고

○ (**검사수행**)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

*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결과회신**)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공문 등)

2.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등 보건교육 실시

- (**음성**)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양성**)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재택격리 권고* 안내

* 재택격리는 국내에 거주지(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세부적인 확진자 이송 및 격 절차는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따름

- (**미결정**)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 권고 여부 결정

○ (**검사결과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 일일현황 실적 보고

※ 검사확인서[서식 11]는 내국인에 한해 요청시 발급 가능, 외국인은 발급 불가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 (**환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일일현황 보고

2. 확진 환자 이송 및 인계

가. 확진자 이송

○ 확진자 5일 격리권고 안내 및 귀가 또는 필요시 병원 방문 안내

※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

○ **(이송수단)** 검역소·보건소·119·민간운영 구급차 또는 개인차량(본인·동거가족 운전) 및 방역(일반) 택시 이용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송

*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 자제

○ **(방역수칙)** KF94 동급 이상이 마스크 및 장갑 착용,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운전시 창문 개방,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선금지

*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

나.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항만)

○ (**조치사항**)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권고

* 확진자 격리 권고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선내 격리 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

○ (**확진자 하선**) 확진자는 5일 격리 이후 하선 권고

○ (**하역작업 등**)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선원교대 등

○ (**추가검사**)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 불요

※ **확진자 발생 선박 입항 시 조치사항(확진자가 선박 내 탑승)**

○ 검역소장 판단 하에 진단검사, 격리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Ⅶ. 기타 행정사항

○ (**행정조치**)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 등 조치, 소독이행여부 확인

○ (**이송수단 등 소독**) 공·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실),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

*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자체 소독 수행(소독결과보고서 확인,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http://ecolife.me.go.kr) 사용 확인 등)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3. 5.>

건강상태 질문서

(앞쪽)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도착 연월일
선박·항공기· 열차·자동차명	좌석번호
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1)	2)	3)	4)

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발열	[ ]오한	[ ]두통	[ ]인후통	[ ]콧물
[ ]기침	[ ]호흡곤란	[ ]구토	[ ]복통 또는 설사	[ ]발진
[ ]황달	[ ]의식저하	[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 ]그 밖의 증상( )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증상 관련 약 복용	[ ] 현지 병원 방문	[ ] 동물 접촉

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증상 없음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인은 위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148㎜×210㎜[황색지(80g/㎡)]

서식 2 검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검역소→법무부) <삭제>

서식 3 특별검역신고서 및 Q-code 이용 안내 <삭제>

서식 4 검역확인증 <삭제>

서식 4-1 검역조사증 <삭제>

서식 5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삭제>

서식 6 격리통지서 <삭제>

서식 7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 점검 항목

순서	점검 항목	검역조사 방법 분류
①	선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승선검역
②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	승선검역
③	선박위생관리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승선검역
④	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박 * 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여부 고려 ※ 도선사 등 '검역 전 승선허가자'는 예외	승선검역

- 검역조사 방법

、(승선검역) ①, ②, ③, ④

、(전자검역) '①' ~ '④' 중 전부 "미해당" 인 경우

□ 점검 시점 : 입항 전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식 8 검사의뢰 관리대장 양식(엑셀작성)

* 향후 비용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작성(비고에 여권번호 기재)

연번	의뢰일	성 (Sur-name)	이름 (Given 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운송 수단명	검체 종류	의뢰 기관명	판정 결과	판정 결과 통보일	인수자	인계자	비고
(예)	2020-03-01	홍	길동	REPUBLIC OF KOREA	yymmdd		상기도 또는 하기도		양성 또는 음성	2020-03-02			
(설명)	**yyyy-mm-dd** 형식 유지	**성명 작성** - 내국인은 "한글명"으로 작성 -외국인은 여권에 명시된 "영문명"으로 띄어쓰기 일치하게 작성		**여권에 명시된 공식적인 국적(영문)**으로 기재 -예시 REPUBLIC OFKOREA(o) 대한민국(x) 한국(x) South Korea(X)	**주민번호 앞자리 형식으로 6자리** 기재 **(yymmdd)**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기재** **(★ 검체 1건 기준으로 작성)** 1명이상 ·하기도 2건 검사 했을경우, **상·하기도 각각 분리하여 작성** (셀 추가하여 2줄로 작성) - 구인두, 객담, 구, 비, 객 등으로 나열표기 금지		**미결정** (indeterminate) : 데이터 삭제	**yyyy-mm-dd** 형식 유지			

서식 9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9. 11.>

( ) 검체 시험의뢰서							처리기간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기관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별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수량)							
시험항목							
검체 채취 구분 (1차 또는 2차)							

담당의사소견서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첨부자료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개)]

처리 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검사	➔	결재	➔	성적서 발급
의뢰인		질병관리청(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0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삭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신청인	성 명		국적	
	생년월일		운송수단 명	
	주 소			

▣ 검체 채취

검체번호	검체 채취일	검체 채취자	검체 종류	채취 목적	비고

위 사람의 (검체) 에 대한 (병명)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결과

검사항목	최종결과	결과 판정일	비고

*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직인

신청인	성 명		국적	
	생년월일		운송수단 명	
	주 소			

▣ 검체 채취

검체번호	검체 채취일	검체 채취자	검체 종류	채취 목적	비고

위 사람의 에 대한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검체) (병명)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결과

검사항목	최종결과	결과 판정일	비고

*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직인

서식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삭제>

서식 13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조사자	소속:		조사일	년 월 일
	성명:	연락처 :		

1. 기초조사							
입국일시			편명/선명			좌석번호	
이 름	성	이름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직업(직장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기초조사의 인적 사항은 '건강상태질문서'의 인적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여행력					
최근 21일 동안의 여행력 (경유국 포함)	국 가	도 시	체류 기간	경유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임상 양상			
최초 증상 발생일	_____년_____월_____일	최초 발생 증상	
약물복용 여부	☐ 예(약물명:) ☐ 아니요	현지 의료기관 방문 여부	☐예 (방문 사유:) ☐ 아니오
증상 (현재 또는 최근 21일 동안 증상 여부 확인)	발열(37.5°C 이상)	☐ 예 (℃)	☐ 아니오
	기침	☐ 예	☐ 아니오
	구토	☐ 예	☐ 아니오
	가래	☐ 예	☐ 아니오
	숨가쁨	☐ 예	☐ 아니오
	오한 및 근육통	☐ 예	☐ 아니오
	복통 or 설사	☐ 예	☐ 아니오
	설사인 경우	양상 ☐ 설사 ☐ 쌀뜨물 ☐ 점액성 ☐ 혈변 기간 일, 회(가장 심할 때 하루 설사 횟수: 회)	
	결막출혈 or 피부 출혈	☐ 예	☐ 아니오
	토혈·혈변·흑색변	☐ 예	☐ 아니오
	탈수	☐ 예	☐ 아니오
	기타	(소화기 증상) (비뇨기 증상 등) ( )	

4. 위험요인		
동물 접촉력	**발병 감시 기간 이내에 각종 동물(박쥐, 낙타, 침팬지 등 영장류, 쥐 등 설치류, 돼지·닭 등 가금류)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접촉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_____
	동물을 접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_____
환자 접촉력	**발병 감시 기간 이내에 다음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염병 확진자	□예 □아니오 □모름
	감염병 의심 또는 추정 환자	□예 □아니오 □모름
	기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급성 호흡기 또는 바이러스출혈열 등 감염병 증상으로 치료받은 자 또는 사망한 자	□예 □아니오 □모름
접촉자 조사	동행 여행객	□ 명
	동일 객실 이용자(선박 해당)	□ 명
	선실 방문자나 접촉자 명단(가능한 한 특정하여 작성)	□ _____ □ _____ □ _____
	운송 수단 내 *방문 장소(가능한 시간과 장소 특정하여 작성) * 화장실 등	□ _____ □ _____ □ _____
기타 사항	섭취 음식	□ _____ □ _____ □ _____

5. 검역관 의결사항

6. 증상 확인 동의서		
□ 확진 시까지 격리 및 대기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증상 확인을 위한 검체(체액 등) 채취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증상자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에 의거,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참고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단, 선내 격리 및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1) 검체종류

▶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 비인두도말물	▸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채취	▸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로 대체
2	하기도	▸ 가래	▸ (용기) : 멸균 50㎖ 튜브 ▸ (검체량) : 3㎖ 이상	▸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단순 통증·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

○ (**상기도 검체**) 면봉을 이용하여 상기도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9]와 함께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빰 안쪽, 혀 뿌리 등이 아닌, 혀를 누르고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되,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채취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o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o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o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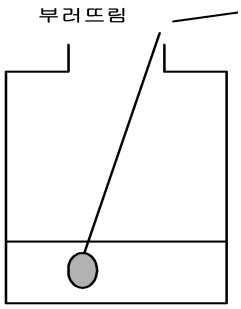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가래 채취 방법]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하여 가래 채취

4. 완전 밀봉(4℃ 유지)

2)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3중 포장용기(예시)]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다. 주의 사항

○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

2. 검사 의뢰

○ (**검역소**) 검사의뢰 관리대장[서식 8]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체 시험의뢰서[서식11] 작성,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해당기관 서식 사용

○ (**검역소**) 검체채취 후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로 검사 의뢰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질병대응센터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검체운송기관 등을 통해 질병대응센터로 운송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4℃를 유지하여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청)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적절한 개인 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기관

◆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검역소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5. 검사 결과 보고

○ **(검사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일일현황 실적 보고

-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통보 및 설명

○ 재검 필요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지침」과 「COVID-19 검사 Q&A」 최신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정

▶ 해당 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록 2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병원체 종류,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개인보호구 **탈의(제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넣기(**폐기**)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 (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 일회용 가운, 고글(안면보호구)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및 배설물 접촉이 가능하거나. 튈 수 있는 상황에서 점막·피부 보호 및 의복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 가능

(출처) CDC'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core-practices/index.html

※ 확진/의심환자 병실 출입, 진료, 간호 등 :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 및 간호 등은 [감염관리 전문가] 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보호구 수준 결정

긴팔가운 4종 세트 착용 예시

-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4종	전신 보호복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	-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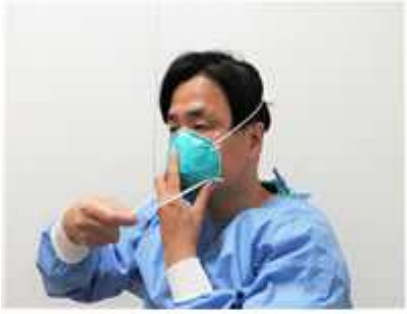		
4.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table>
<tr><td colspan="2"> </td><td> </td></tr>
<tr><td colspan="2">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td><td>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colspan="2">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td><td>4. 손 위생을 시행한다.</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td><td>6. 손 위생을 시행한다.</td><td colspan="2">7. 마스크를 제거한다.</td></tr>
<tr><td> </td><td> </td><td> </td></tr>
<tr><td>8. 손 위생을 시행한다.</td><td colspan="2">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한다.</td></tr>
</table>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원칙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

부록 3 국립검역소 격리시설 내 격리 대상자 안내문 <삭제>

부록 4 항만 입항 군용(軍用) 운송수단 검역절차 <삭제>